

#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을 지원합니다.

- 1월 6일부터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접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주 단체를 1월 6일(화)부터 모집한다.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지역·업종별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 \* (운영비 지원대상) ▲사업주 협·단체, 조합 등
- \* (운영비 지원수준)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최대 월 271만원 한도
- \* (운영비 지원비율) ▲정부: 80% + 협·단체 20%,

작년에는 117개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했고, 공동안전관리자가 4,010개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험성 평가 및 현장의 위험요소 발굴·개선·제거 등을 지원했다.

- [사례 1] “비계, 전기안전 등 작업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감전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현장 활동 계획을 세우고 관리한 결과, 93개 회원사에서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시멘트업종 협·단체>
- [사례 2] “조선소 고소작업 시 개구부 추락과 작업장 내에 야적된 중량물 부딪힘, 용접 공간의 화재 등 위험 요인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안전조치를 지원한 결과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조선업종 공동안전관리자>
- [사례 3] “기계 제조업체 압축 공정에서 발생하는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방법 개선을 지원하였더니 끼임 위험이 줄었고, 현장 불편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니 신뢰가 커졌습니다.” <기계제조업종 공동안전관리자>

이 사업은 '24년부터 '25년까지 한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계속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는 재해 위험이 높은 제조업,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과 산업단지에 소재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협·단체를 우선 선정하고,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월 운영비 지원 한도를 '25년 250만원에서 '26년 271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단체는 1월 6일(화)부터 1월 30일(금)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8)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업종의 작업내용과 사업장 실정을 잘 아는 사업주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사업주단체의 공동안전관리자 채용과 지원을 강화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위험을 줄여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대재해로드맵이행추진단 로드맵이행총괄팀	책임자	과 장	남현주 (044-202-8864)
		담당자	사무관	윤인식 (044-202-8866)
담당 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조사업부	책임자	부 장	최원일 (052-703-0751)
		담당자	차 장 과 장	이문기 (052-703-0754) 최대규 (052-703-0777)



□ 사업개요

- 지역·업종별 사업주단체\*가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소속 회원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공동으로 지원

□ 지원대상

- 지역·업종별 협동조합, 협회,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 사업주 단체
- '26년 공동안전관리자 총 200명
- \* 공동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 외 협회·단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사업 참여 기간 중 사업자등록 및 타 기업 근무 등 겸직을 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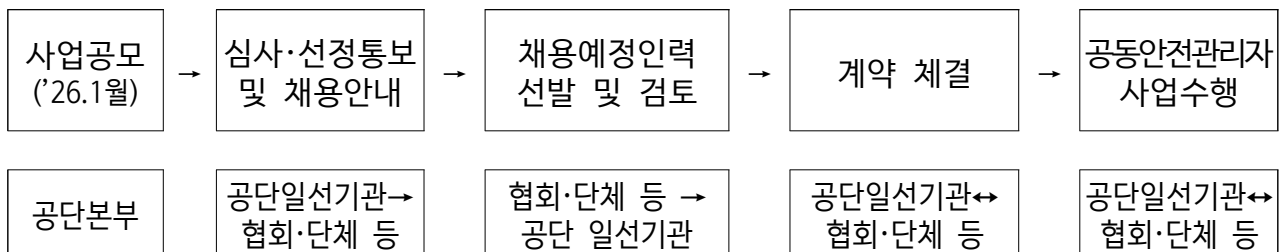
**《 공동안전관리자 자격기준 》** ※ 아래 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산업안전보건 관련 안전 실무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 ②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실무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 충족한 자

□ 지원내용

- 사업주단체에 대해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의 80%(월 271만원 한도) 최대 12개월 간 지원(협·단체에서 20% 이상 매칭)
-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해 업무수행 매뉴얼, 교육 등 별도 지원

□ 사업절차



일선기관명	관할지역	연락처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6711-2966
강원지역본부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033-815-1023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6924-8739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02-2086-8017
강원동부지사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033-820-2573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608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27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055-269-0547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71-7550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062-949-8769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063-240-8542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061-288-8744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16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63-460-3626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061-689-4956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북구, 중구, 동구, 수성구)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053-609-0557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남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053-650-6822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054-478-8023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71-2043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26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031-259-7176
경기북부지사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031-828-1943
고양파주지사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031-540-3844
경기중부지사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032-680-6535
경기서부지사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031-481-7520
경기동부지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031-785-3323
경기남부지사	경기도(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031-690-1932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042-620-5654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043-230-7127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043-849-1044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041-570-3436